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광 수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『장애인복지법』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복지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며,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적용 복지시설의 명칭 명료화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의 이용대상 확대(안 제5조)
- 다. 직업훈련시설의 일반인 이용료 실비 부담 (안 제6조)
- 라. 상위 관련 법령 근거 조항 정비 및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정비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『장애인복지법』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,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적용 복지시설 명칭 명료화(안 제2조)

- 충주시 호암동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각각 위치한 “충청북도 장애인 복지관”과 “충청북도 곰두리 체육관”의 명칭을 명기하여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시켰음.

나.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이용대상 확대(안 제5조)

-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곰두리체육관 내 수영장의 경우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음.

다. 직업훈련시설의 일반인 이용료 실비 부담(안 제6조)

- “별표”에서 규정하였던 이용료를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로 세분하여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”과 “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” 이용료를 규정하였고, 직업훈련 시 일반인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서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함.

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조례의 명료성 제고와 일부시설에 대해 비장애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 이용료 현실화와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